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44
------------	-------

제출년월일 : 2014.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 사유

정부의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T/F팀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구본청 부구청장 밑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둠(안 제3조의2 제1항)
- 나.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 4. 10.)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한시적으로 규제 개혁추진단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한시기구) <u>&lt;신 설&gt;</u> (생 략)	제3조의2(한시기구) <u>①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한시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u> <u>② (현행 제1항과 같음)</u>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임대민
연락처	02-3153-8216